

[4-2생활권 L1,L2블록 세종 더휴 예미지]

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
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금융결제원(www.APT2you.com)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 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·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금융결제원(www.APT2you.com) 인터넷 청약접수 및 등·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[2019.05.23.(목)]에 당사 홈페이지(www.thehue-yemizi.com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급개요

- 공급위치 : 세종특별자치시 4-2생활권 L1,L2블록
- 사업주체 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/ 한신공영(주) / (주)금성백조주택
- 입주시기 : **2021년 10월 예정**
- 건축규모
- L1블록 : 6개동 총 338세대

구분	통합 주택형	해당 타입	세대수
85㎡ 이하	59.9800A	59A	91
	59.9800B	59B	37
	59.9800C	59C	50
	84.9200A	84A	18
	84.9100B	84B	13
	84.9200C	84C1, 84C2	55
85㎡ 초과	84.0000D	84D2, 84D3	15
	97.0000A	97A1, 97A2, 97A3	59
	합계		338

- L2블록 : 9개동 총 508세대

구분	통합 주택형	해당 타입	세대수
85㎡ 이하	59.9800A	59A	44
	59.9800B	59B	46
	59.9800C	59C	41
	84.9200A	84A	37
	84.9100B	84B	78
	84.9200C	84C1, 84C2	125
85㎡ 초과	84.0000D	84D1, 84D2, 84D3	57
	97.0000A	97A1, 97A2, 97A3	80
	합계		508

※ 해당 주택형·타입·세대수 등은 사업추진 또는 인·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,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명을 통합하였으므로, 당첨된 타입의 구조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인면특화 등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해 시공되는 부분으로 당사에 일체 이의 및 변경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분양일정(예정)

구분	예정 일자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19.05.23.(목)	당사 홈페이지(www.thehue-yemizi.com)
건본주택 오픈	2019.05.24.(금)	세종 더휴 예미지 건본주택(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-1)
특별공급 접수	2019.05.29.(수)	금융결제원(www.APT2you.com) 인터넷 청약접수
당첨자 발표	2019.06.10.(월)	당첨자 및 등·호수 선정(개별조회 가능)
계약체결 기간	2019.06.26.(수)~28.(금), 3일간	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일

※ 상기 분양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·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,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

■ 기본요건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된 분
 - (당첨예정자)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‘당첨자’가 되는 분
 - (예비대상자)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에만 추가로 ‘당첨자’가 될 수 있는 분

■ 입주자저축 구비여부

추천대상자 구분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민 등	필요 없음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	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

■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[2019.05.23.(목)]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

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

- 가. 주택공급신청자
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[2019.05.23.(목)]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(입주권)은 주택소유로 간주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거,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,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)
-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(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)내에 있는 경우
-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)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 예정일 [2019.05.29.(수)]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.**
- 청약접수는 **금융결제원(www.ap2you.com)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**,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)가 가능합니다.
-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, 다른 공급유형(다자녀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, 국가유공자, 기관추천)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(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,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)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%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, 당첨 취소, 공급계약 미체결,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. (단,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한 예비대상자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.)
- 당첨자 발표 및 동·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. (개별통지 불가, 신청자 직접 확인)
- 신청주택의 동·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·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 당첨자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,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,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4.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일정(예정)

■ 청약일정 및 장소

신청 대상자	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·통보된 분에 한함.
청약접수 일정(예정)	2019.05.29.(수) / 08:00~17:30
신청 장소	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ap2you.com)

※ 2018.05.04.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금융결제원(www.ap2you.com)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,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(10:00~14:00까지)가 가능함.

5. 기타 유의사항

- 주택건설지역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(분양권)소유, 대출 유·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이며 당첨자(계약자)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다른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.
단,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청약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.
-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, 동·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제결 불가,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공급금액, 재당첨제한, 전매제한,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“세종 더휴 에미지” 분양사무소 (☎1833-3325)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위치도 및 조감도



※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